

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신규 모집 공고

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대상자 모집에 관해 신청·접수를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8일
경기도지사

1. 모집개요

- 신청자격 :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
- 신청기간 : 2025. 11. 18.(화) ~ 12. 2(화)
-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
 - 제출서류 :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신청서(p4, 붙임1)
 -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(p5, 붙임2)
 - ③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모집인원 : 31개 시군 145명
수원시 10 용인시 9 성남시 9 화성시 7 부천시 9 안산시 8 평택시 6 안양시 5
시흥시 5 김포시 4 광주시 5 광명시 3 하남시 3 군포시 2 오산시 3 이천시 4
안성시 4 의왕시 1 양평군 3 여주시 2 과천시 1 고양시 10 남양주시 7 파주시 6
의정부시 5 양주시 4 구리시 2 포천시 3 동두천시 2 가평군 2 연천군 1
- 지원내용 :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
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안내 등 안부확인
- 지급방법 : 지정된 현대이시웹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
- 지원기간 : 1년(2026년 1월~2026년 12월)
 - ※ 연도내 추가 지원자도 2026년 12월까지 지원

2. 신청자격 기준

- 신청자격 : 도내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*
< *복지서비스 등 미이용 기준 >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2024~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(160만원) 이상 지원을 받은 자
-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시설*에 입소·이용하는 자, 「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
* 장애인 거주시설, 지역사회재활시설(복지관, 주간보호센터 등)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 등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(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)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활동지원(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) 대상자 (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)
-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(센터)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별/주간/24시간 이용자
- 「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」 제17조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돌봄 이용자
- 이 밖에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자

3. 선정기준 및 절차

- 필수요건 : 제출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
 -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(서명 등 포함)
- 선정기준 : 시군별 배분된 모집인원 중 선정기준표 점수가 높은 자
 - 시군담당자 신청서류 검토 및 복지서비스 미이용 확인
 - ※ (동점자) 선정기준표 항목별 순서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
○ 선정 절차

절차	담당주체	내용
신청 ↓	발달장애인 보호자 등	▶ 신청자(보호자, 담당공무원 등)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
접수 ↓	읍면동 주민센터	▶ 자격충족 및 서류누락 확인 후 신청자 취합·제출 (읍면동 → 시·군)
대상자 추천 ↓	시·군	▶ 선정기준표 작성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추천(시·군 → 경기도)
대상자 선정	경기도 · 선정위원회	▶ 선정위원회 구성(도, 현장·학계 전문가 내외) 및 개최 - 심사를 통한 대상자 그 외 대기자 관리 선정자 개별 통보

4. 대상자 선정

○ 최종선정 : 2025년 12월 중 개별 통보

- 미선정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예비대상자 관리

5. 유의사항

○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,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(누림)

☎ 031-299-5074, 031-299-5067, 031-299-5069

- 경기도 및 시·군 담당자